# 학교법인 배달학원 정관 시행세칙

제정 : 2010. 4.23.

1차 개정 : 2014. 5. 9.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학교법인 배달학원 정관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 제7조 규정에 따라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자산과 회계

제2조(보통재산의 관리) 정관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보통재산 중 가액 3억원 이상인 보통재산을 매도.증여.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한다.

### 제3장 교직원

제3조(일반직원의 임면) 법인 및 대학의 직원은 상호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, 이때 근무 수 행능력과 실적 등을 참작하여 총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. [본조신설 2014.5.9.]

### 제4장 보칙

제4조(세칙의 개정) 이 시행세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. (개정 2014.5.9.)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